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보수사 전담부대 소속 군사경찰에 의한
안보수사 등 〉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958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 춘 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국방조사본부 안보수사업무 전담부대에서 안보수사 수행 (안 제5조 제1항)	4
2.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안 제2조 제2항)	10
3. 국가정보원과 안보수사 관련 공조체계 구축 및 협력 (안 제5조의2 신설)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선회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7. 15.
3. 회 부 일 : 2026.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사경찰의 수사범위는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전 국군방첩사령부가 전담하던 내란·외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보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군사경찰에 부여되었음.

그러나 안보수사는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안보수사 전담부대의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규정과 안보수사에 대한 외부 수사·정보기관과의 협력 근거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조사본부 소속 중 안보수사업무를 전담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사경찰로 하여금 안보수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고, 안보수사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내 안보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군사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항 및 제5조제1항, 제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① 조사본부 소속 중 안보수사 전담부대 소속 군사경찰에 의한 안보수사¹⁾, ② 군사경찰²⁾의 정치적 중립, ③ 군사경찰의 국가정보원과의 공조체계 구축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안보수사 전담부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부대를 통한 안보수사, 정보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군내 안보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명문화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1) 「군사법원법」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한다.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체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2) 「군사법원법」

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1.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
2.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이하 “군사안보지원부대”라 한다)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

3. 삭제

4. 검찰수사관

1. 국방조사본부 안보수사업무 전담부대에서 안보수사 수행 (안 제5조 제1항)

- 최근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사경찰은 전 영역의 수사가 가능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종전 국군방첩사령부가 전담하던 내란·외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보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군사경찰에 부여되었음.
- 개정안은 종전의 국군방첩사령부가 담당하던 안보관련 수사를 국방부의 조사본부 소속 중 안보수사업무를 전담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사경찰이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u><단서 신설></u>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① ----- ----- ----- ----- ----- 다만, 제3호의2의 직무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조사본부 소속 중 안보수사업무를 전담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사경찰이 수행한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 에 규정된 <u>범죄</u>의 정보수집· 예방·제지 및 수사 <u><신 설></u> 4. ~ 8. (생략) ② ~ ⑥ (생략)	3. ----- -----<u>범죄(제3호의2 각 목 에 해당하는 죄는 제외한다)</u>- ----- 3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u>범죄의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u> 가. 「형법」 제2편제1장 및 <u>제2장의 죄</u> 나. 「군형법」 제2편제1장, <u>제2장, 제80조 및 제81조의 죄</u> 다. 「국가보안법」, 「군사 <u>기밀보호법</u>」 및 「남북교 <u>류협력에 관한 법률</u>」에 <u>규정된 죄</u> 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u>법률</u>」(「국가보안법」에 <u>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u> <u>「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률</u>」에 <u>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u>)에 <u>규 정된 죄</u>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

□ 개정안은 안보수사가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안보수사 전담 부대의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법령 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이와 관련하여 최근(2026. 7. 31.), 정부는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 하고 정치화된 권력형 임무·기능은 폐지하며, 방첩·보안·안보수사는 신규 창설부대와 조사본부로 기능을 분산하였음.

이는 「국군조직법」³⁾ 제2조제3항에서 군사상 필요에 의한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서, 종전의 국군방첩사령부도 대통령령인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따라 설치되었음.

방첩·보안·안보수사에 관한 개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첩 기능의 경우 방첩·방산정보,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하였고,

보안 기능의 경우 보안업무 및 보안감사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

3) 「국군조직법」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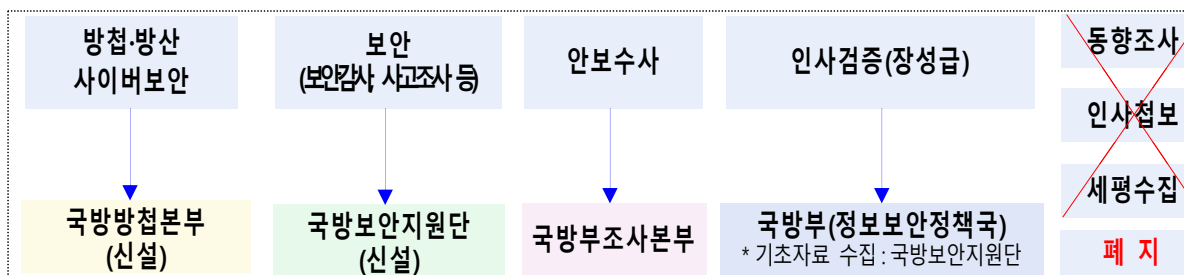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원단을 창설하였으며,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였음.

또한,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및 불법·비리정보 수집
기능은 폐지하였음.

[군 수사 기능 개편 내용]



자료: 국방부

□ 정부의 조치에 따르면 개정안이 제안한 안보수사 업무의 경우,
「군사법원법」의 개정 내용대로 모든 군사경찰이 수행할 수 있
되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및 예방과 그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를
국방조사본부에서 총괄하도록 하였음.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안보수사 전담부대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일정 부분 달성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음.

[개정안과 국방조사본부령 간 임무 비교]

개정안	국방조사본부령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3호의2의 직무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조사본부 소속 중 안보수사업무를 전담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사경찰이 수행한다. 3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범죄의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 가.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⁴⁾ 나. 「군형법」 제2편제1장, 제2장, 제80조 및 제81조의 죄⁵⁾ 다.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제3조(임무) 조사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사경찰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예방과 그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총괄 가.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나. 「군형법」 제2편제1장, 제2장의 죄, 같은 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 다.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3. ~ 13. (생략)

4) 내란, 외환의 죄

5) 반란, 이적, 군사기밀 누설, 암호 부정사용

□ 국방부는, 안보수사의 중요성과 독립성 보장 필요성에 따라, 안보 수사 전담부대의 설치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동의하고 있음.

다만, 「군사법원법」에서 군사경찰 병과에 소속된 군사법경찰관의 경우 안보수사를 포함한 군사법원 관할 사건 일체에 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긴급상황·현장 접근성·다수 지역 대응 필요성 등에 따라서 안보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군 수사단의 수사역량을 활용할 소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국방부조사본부 소속 인원만으로 안보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임.

또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은 교통단속·범죄예방 활동·장비사용 등 직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수행 보장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로,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현행 법체계의 정합성 및 통일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임.

2.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안 제2조 제2항)

- ☐ 개정안은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① (생략) ② 군사경찰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u>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u> <u>이 법</u> -----.

- ☐ 국군의 정치적 중립은 대한민국헌법⁶⁾, 국가공무원법⁷⁾ 등에 규정된 당연한 의무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임.

- ☐ 참고로, 최근(2026. 7. 31.) 시행된 「국방방첩본부령」, 「국방보

6) 「대한민국헌법」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7)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안지원단령」, 「국방부조사본부령」에서도 기본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음.

[군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 규정]

국방방첩본부령	국방보안지원단령	국방부조사본부령
제2조(기본원칙) ① 국방방첩본부(이하 “방첩본부”라 한다) 소속의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소속군인등”이라 한다)은 임무를 수행할 때 <u>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u>	제2조(기본원칙) ① 국방보안지원단(이하 “보안지원단”이라 한다) 소속의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소속군인등”이라 한다)은 임무를 수행할 때 <u>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u>	제2조(기본원칙) ① 국방부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라 한다) 소속의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소속군인등”이라 한다)은 임무를 수행할 때 <u>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u>

□ 국방부는, 군인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특히 안보수사 관련 향후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조하는 취지에서 군사경찰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별도로 명시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므로 동의한다는 의견임.

3. 국가정보원과 안보수사 관련 공조체계 구축 및 협력(안 제5조의2 신설)

- ☐ 개정안은 안보수사를 담당하는 군사경찰이 안보수사 시 국가정보원과의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이는 안보수사 기관 간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정보공조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안보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조의2(관련기관과의 협력) 군사경찰은 제5조제1항제3호의2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 국방부는, 안보수사에 대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정보공조 등에 대한 제도적 보장에 따라 더욱 원활한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므로 동의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07